

#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
·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230회 정례회

·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(2004. 7. 15) 상정, 질의답변, 수정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정 정 순)

가. 제안 이유

○ 도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○ 시상분야는 종합대상과 부문별대상(기업경영, 기술개발, 수출, 노사화합)으로 함(제2조)

○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도내 기업으로 함(제3조)

- 대상심사를 위하여 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(위원장 부지사, 위원 15인이내) 심사함(제4조)
-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(제6조)
-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지급(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 상 업)

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

- 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있는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와의 중복여부와 시상금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
- 조례 제2조의 시상분야에는 종합대상과 4개부문의 부문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, 노사화합 등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에 대한 시상과 수상기업에 대한 특전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
- 제3조의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

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 : 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 : " 수정 가결 "

가. 수정이유

○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함.

나. 수정 주요내용

○ 수상 대상후보자를 전체 중소기업에서 중소제조업으로 한정 함.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 없 음 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 없 음 "

9. 별 칩

◎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◎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

##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제안년월일 : 2004년 7월 15일

제안자 : 정윤숙 의원 외

### 제안 이유

-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함.

### 주요 내용

- 수상 대상후보자를 전체 중소기업에서 중소제조업으로 한정 함.

##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”를 “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”로 한다

###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대상후보자).....	제3조(대상후보자).....
.....	.....
..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	.. 중소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##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(이하 "대상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분야) 대상 시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종합대상 : 경영 기술 수출 및 노사 등 각 부문 종합 우수업체
2. 부문별 대상
  - 가. 경영대상 : 경영능력, 경영성과, 복리후생 및 투자율 등이 우수한 업체
  - 나. 기술대상 : 연구성과, 기술보유도,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우수한 업체
  - 다. 수출대상 : 수출증진,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등이 우수한 업체
  - 라. 노사화합대상 : 노사분규 및 임금채불이 없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업체

제3조(대상후보자)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안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, 기술개발,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 ①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
- ③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, 학계,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회의)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.

제6조(추천 및 심사)①대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장 군수가 추천하되,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대상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

제7조(시상)①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.

②제1항의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.

제8조(홍보 등)①대상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

②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규정 및 충청북도포상조례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계법규 발췌

### 〈지방자치법〉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
    타. 중소기업의 육성

제15조(조례)

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〈중소기업 기본법〉

제3조(정부 등의 책무)

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